

## 제 2 장 회 원

제 5 조(회원의 자격) 본 협회의 회원은 본 협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.

제 6 조(회원의 권리)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단체회원은 대표자 1 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.

제 7 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1. 본 협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
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3.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

제 8 조(회원의 탈퇴)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제 9 조(회원의 상벌) ①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
②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 7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·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